

신구조문대비표  
「관세법」

<p style="text-align: center;"><b>관세법</b>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b>관세법</b>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p>
<p><b>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생략)</b> &lt;신설&gt;</p>	<p><b>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b>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b>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③ (생략)</p>	<p><b>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b>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b>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 ④ (생략)</p>	<p><b>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b>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38조(신고납부) ①·② (생략)</b>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p>	<p><b>제38조(신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b>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p> <p>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p> <p>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p> <p>&lt;신 설&gt;</p>	<p>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38조의6(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p>

<p><b>제39조(부과고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p> <p>1. ~ 5. (생략)</p> <p>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lt;신설&gt;</p> <p>②·③ (생략)</p>	<p><b>제39조(부과고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p> <p>7.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42조(가산세)</b>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1.·2.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p> <p>2. (생략)</p> <p>④ ~ ⑦ (생략)</p>	<p><b>제42조(가산세)</b>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b>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b> ①·② (생략)</p> <p>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b>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p>

<p>④ (생략)</p>	<p>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b>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p> <p>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p> <p>2. (생략)</p> <p>② ~ ⑥ (생략)</p>	<p><b>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b>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p> <p>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b>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략)</b>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b>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b>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b>제135조(입항절차) ①</b>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b>지체 없이</b>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b>제135조(입항절차) ①</b>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b>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36조(출항절차) ①</b>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b>전에</b>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136조(출항절차) ①</b>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b>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p>

<p>② ~ ⑤ (생략)</p>	<p>받아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40조(물품의 하역)</b> ① ~ ④ (생략)</p> <p>⑤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b>기간</b>을 제한할 수 있다.</p> <p>⑥·⑦ (생략)</p>	<p><b>제140조(물품의 하역)</b>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b>기간</b>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b>제155조(물품의 장치)</b> ① <b>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b>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b>제155조(물품의 장치)</b> ① <b>외국물품</b>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b> ① ~ ⑤ (생략)</p> <p>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p> <p>⑦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b>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b>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p> <p>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b>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b>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b>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b>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b>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b>다음 각 호의 기업</b>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lt;신 설&gt; &lt;신 설&gt;</p> <p>② (생 략)</p> <p>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b>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b>에도 또한 같다.</p> <p>④ ~ ⑧ (생 략)</p>	<p>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 <p>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b>경우</b>에도 또한 같다.</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b>제177조(장치기간)</b>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생 략)</p> <p>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lt;단서 신설&gt;</p> <p>다. (생 략)</p> <p>2. (생 략)</p> <p>② (생 략)</p>	<p><b>제177조(장치기간)</b>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현행과 같음)</p> <p>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b>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p> <p>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06조(유치 및 예치)</b>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 략)</p> <p>다. 제235조에 따른 <b>지식재산권</b>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라.·마. (생 략)</p> <p>②·③ (생 략)</p>	<p><b>제206조(유치 및 예치)</b>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제235조에 따른 <b>지식재산권</b>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라.·마.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209조(통고)</b>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 물품을 <b>매각하려면</b>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b>제209조(통고)</b>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 물품을 <b>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b>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b> ①·② (생 략)</p> <p>&lt;신 설&gt;</p>	<p><b>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22조(보세운송업자들의 등록 및 보고)</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 ~ ⑤ (생략)</p>	<p><b>제222조(보세운송업자들의 등록 및 보고)</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b>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b>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b>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b>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p>	<p><b>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p> <p>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p>

<p>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 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246조(물품의 검사)</b> ① (생략)</p> <p>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246조(물품의 검사)</b>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248조(신고의 수리)</b>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b>제248조(신고의 수리)</b>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b>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p>	<p><b>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b>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p> <p>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li> <li>「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li> <li>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li> </ol> <p>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p> <p>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li> <li>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li> </ol> <p>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li> <li>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li> <li>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li> </ol>
<p><b>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b>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 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생략)</li> </ol> <p>&lt;신 설&gt;</p>	<p><b>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b>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 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현행과 같음)</li> <li>「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li> </ol>
<p><b>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b>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p>	<p><b>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b>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p>

<p>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를 말한다.</p> <p>③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p>	<p>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b>제270조의2(가격조작죄)</b>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p> <p>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p> <p>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p> <p>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p>	<p><b>제270조의2(가격조작죄)</b>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p> <p>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이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p> <p>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p>	<p>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p> <p>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p> <p>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p>

<p><b>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생략)</b></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4.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의2·5.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략)</p> <p>5.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6. (생략)</p> <p>④·⑤ (생략)</p>	<p>한다.</p> <p><b>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의2·5.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6.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b>제277조(과태료) ① ~ ⑤ (생략)</b></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3. ~ 7. (생략)</p> <p>⑦·⑧ (생략)</p>	<p><b>제277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b></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38조제4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3. ~ 7. (현행과 같음)</p> <p>⑦·⑧ (현행과 같음)</p>
<p><b>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 ⑪ (생략)</b></p> <p>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p>	<p><b>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b></p> <p>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p>

<p>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③ (생략)</b></p> <p>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b>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후단 신설&gt;</b></p>	<p><b>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제6항·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p>
<p><b>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 ⑪ (생략)</b></p> <p>&lt;신설&gt;</p> <p>&lt;신설&gt;</p>	<p><b>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 ⑪ (현행과 같음)</b></p> <p>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b></p> <p>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b>제222조제1항제1호</b>,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b>권한</b>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b>&lt;단서 신설&gt;</b></p> <p>1. ~ 4. (생략)</p> <p>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p> <p>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p> <p>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p> <p>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p>	<p><b>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b>제222조제1항·제3항·제5항</b>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b>업무</b>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b>제222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른 업무</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p> <p>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p> <p>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p> <p>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p>

<신 설>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